



주요경과

제12차 통합준비위원회 회의

- 일시 및 장소: 2015. 12. 14.(월) 15:00 / 문체부 서울사무소
- 주요내용(심의사항)
 - 대한체육회 올림픽마케팅 수익금 배분 비율 관련 (안)
 - 체육회10%, 중앙종목20%, 시도10%, 시도종목60%
 - 가입탈퇴규정 일부조항(안)
 - 회원종목단체 등급분류(안)의결 및 체조·에어로빅 통합, 봅슬레이스켈레톤·루지 통합 관련 논의
 - 통합체육회 출범 후 제도발전위원회 설치하여 통합 과정 상 미비점 검토

통합준비위원회 주최 회장선거제도 공청회

- 일시: 2015. 12. 15.(화) 09:30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주최/주관: 통합준비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 참석: 통준위원, 종목·시도단체, 체육학회 등 약 300명
- 주요내용: 제도설계방향, 절차적 쟁점, 해외NOC 선거제도
- 주요의견
 - (체육회) 선수·지도자 수가 동호인 수 대비 저평가 우려, 시군구체육회 별도 부여 투표권은 시도체육회에 포함하여 가중치 상향 조정 제안(투표가치의 왜곡 가능성 방지), 선거인단 구성 공정성 확보 필요
 - (국체회) 저변없는 올림픽종목 우대 불합리
 - (기타) 제도 단순화 및 선거인단 규모 축소 필요, 규모가 큰 지역 또는 단체에 유리

제13차 통합준비위원회 회의

- 일시: 2015. 12. 21.(월) 15:00
- 장소: 소공동 롯데호텔 37층 가네트홀
- 주요내용
 - 봅슬레이·스켈레톤 및 루지 통합 → 올림픽 이후 통합
 - 대한체육회 정관 일부조항(안) 및 부칙(안)
 - 통합체육회장 취임 전까지 공동 회장 체제 유지
 - 종목단체 등급 분류(안)
 - 학교체육 현실 등을 포함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여 차기회의(16년 1월) 시 재논의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장 간담회 개최

- 일시: 2015. 12. 23.(수) 14:00
- 장소: 올림픽파크텔 3층 회의실
- 참석대상: 가맹경기단체장 등 55명
- 주요내용
 - 현 종목단체 분류 기준(안)은 전문체육종목단체에 대한 역차별
 - 통합정관 상 경기단체 권리 침해 관련, 권리 보장을 위해 통추위에 힘 실어줄 필요

향후 일정

대한체육회 설립 기획단 출범

- 목적: 통합체육회 출범의 효율적 준비
- 구성: 단장 및 부단장 포함 총 12명(양 단체 6명씩)
- 기능: 통합체육회 설립 준비 총괄지원 및 집행 (조직관리, 경영지원, 산하단체 통합 지원 등)
- 운영 기간: '15. 12. 28.(월) ~ 통합체육회 출범 시까지
- 사무실: 올림픽공원 소마미술관 1층 회의실

통합 관련 주요기사

(중앙) ▶ "[포럼현장Q]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통합체육회장선거인 제의 근간은?" (12월 15일 스포츠Q, [자세히 보기](#))

"문체부 체육단체통합·생활체육참여증가 등 성과" (12월 16일 SBS, [자세히 보기](#))

"통합체육회, 새 회장 선거 전까지 '공동회장' 체제로 간다" (12월 20일 뉴스1, [자세히 보기](#))

(중목) ▶ "대한골프협회, 전국골프연합회와 통합 논의" (12월 11일 이뉴스투데이, [자세히 보기](#))

"바둑단체 내년 1월까지 통합...초대 회장에 홍석현" (12월 15일 연합뉴스, [자세히 보기](#))

"올림픽메달 유력 종목 뒷전으로 밀려... 종목단체 "선수 수급여건 무시... 통합에 불참" 반발" (12월 18일 문화일보, [자세히 보기](#))

"통합체육회 곳곳 파열음...산 넘어 산" (12월 21일 YTN, [자세히 보기](#))

"봅슬레이-스켈레톤 통합, 올림픽 이후로 연기" (12월 21일 SBS, [자세히 보기](#))

(시도) ▶ "인천 통합체육회 명칭 '인천광역시체육회'로" (12월 10일 인천일보, [자세히 보기](#))

"대전시체육회-생활체육회 전국 처음으로 11일 통합 출범" (12월 10일 충청투데이, [자세히 보기](#))

"경남 '도체육회 + 생활체육회' 가시화" (12월 15일 경남신문, [자세히 보기](#))

"제주 체육단체 통합작업 급물살" (12월 15일 한라일보, [자세히 보기](#))

"울산시 통합추진위 제1차 회의 개최" (12월 16일 국제뉴스, [자세히 보기](#))

"통합경기체육회 29일 출범... '1처1본부3부9과' 체제" (12월 22일 아시아경제, [자세히 보기](#))



① 회원종목단체 등급에 따른 권리와 의무(정회원, 준회원, 인정)

구분	통합체육회에 대한 주요 권리				통합체육회에 대한 주요 의무		
	대의원 파견	재정지원 요청	수익 분배권	통합체육회장 선거권	정관 등 준수	사업 및 예산 보고	회비 납부
정회원	○	○	○	○	○	○	○
준회원	×	○	×	○	○	○	×
인정단체	×	×	×	×	×	×	×

② 등급 분류의 기준(기본 요건 외 등급별로 차등한 요건)

올림픽 종목 여부, 시도종목단체(구성요건을 충족한) 수에 따라 등급을 결정

구분	올림픽 종목 여부	정회원 단체	준회원 단체	인정단체
시도종목단체 수	올림픽 종목	6개	4개	-
	非올림픽 종목	12개	9개	6개
시도종목단체 구성요건	올림픽 종목	시군구종목단체가 전체 시군구의 1/3	시군구종목단체가 전체 시군구의 1/4	-
	非올림픽 종목	2/3	1/2	1/3

③ 등급 분류의 기준에 따른 회원종목단체 등급 분류

원칙대로 시행하는 경우, 기존 정가맹단체(57종목) 중 49종목(올림픽 종목 21종목 포함), 준가맹단체 중 12종목, 인정단체 중 15종목이 강등됨. 이에 따라 가입요건을 완화하여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경과조치를 신설

- ① 올림픽 종목은 요건에 관계없이 정회원단체로 인정
- ② 비올림픽종목은 요건을 완화하여 기준의 50% 이상 충족 시 기존 등급 유지, 50% 미만인 경우 강등
- ③ 강등시 1등급만 강등, 인정단체가 강등되는 경우 등록단체로 인정
- ④ 경과조치는 대한체육회가 설립한 날로부터 2년 후(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재평가
- ⑤ 시·도/시·군·구종목단체별 연 2회의 대회 개최는 2년 후 평가시 요건으로 반영

구분	등급적용	해당 종목
정회원 (57종목)	원칙	(14개, 올림픽종목) 육상,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수영, 배구, 축구, 승마, 농구, 태권도, 스키, 자전거, 체조, 골프 (8개, 非올림픽종목) 야구, 볼링, 검도, 궁도, 게이트볼, 족구
	유예2년	(21개, 올림픽종목) 핸드볼, 사격, 트라이애슬론, 빙상, 요트, 하키, 아이스하키, 럭비, 근대5종, 레슬링, 복싱, 양궁, 역도, 유도, 조정, 카누, 펜싱, 바이애슬론, 컬링, 봅슬레이·스켈레톤·루지 (28개, 非올림픽종목) 우슈, 정구, 스쿼시, 산악/등산, 시름, 당구, 보디빌딩, 인라인롤러, 댄스스포츠, 바둑, 패러글라이딩, 국학기공,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줄넘기, 택견, 수중/스킨스쿠버
준회원 (15종목)	강등	(11개) 소프트볼, 세팍타크로, 카바디, 공수도, 수상스키, 줄다리기, 국무도, 낚시, 종합무술, 라켓볼, 합기도
	유예2년	(4개) 프리테니스, 플라잉디스크, 피구, 견기 등
인정단체 (11종목)	강등	(8개) 오리엔티어링, 크리켓, 항공, 킥복싱, 플로어볼, e-스포츠, 용무도, 체스 등
	유예2년	(3개) 이종격투기, 민속벨리, 요가 등
등록단체 (12종목)	강등	(12개) 모터사이클, 브리지, 무에타이, 삼보, 자동차경주, 플로, 치어리딩, 전통선술, 우드볼, 특공무술, 공수도(연합회), 생활무용 등

분류 절차상의 문제점

1. 국민체육진흥법 부칙 상 '회원 포괄승계' 명시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3246호, 2015.3.27. 일부개정]
부칙 제4조 제1항 (중략)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모든 권리·의무·재산 및 회원은 통합체육회가 포괄 승계한다.

- 회원 등급에 따른 권리가 명확히 상이하므로, 통합체육회 출범 시 회원 등급의 강등은 그 지위가 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워우므로 법률 위반 우려

2. 종목단체 관계자 참여 및 예고 절차 생략

- 단체 지위가 변경되는 중대 사항을 종목단체 관계자의 참여와 사전 예고 없이 확정

분류 기준상의 문제점

1. 국내 스포츠환경에 대한 고려없는 기준 수립

- 대다수 올림픽 종목은 특성 상 시군구별 인프라 (시설·장비·지도자 등)를 갖추기 힘들고, 동호인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음
- 2년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시군구별 종목단체의 설립은 구조적으로 불가능(21개 올림픽 종목 강등 우려)

2. 종목분류 기준 상 형평성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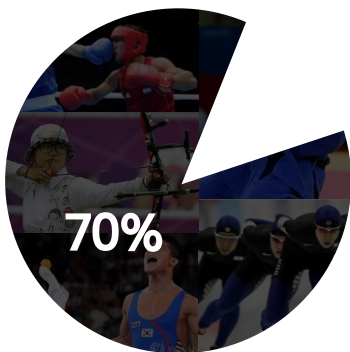
-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종목의 국민사기 진작 및 국위선양 등은 분류기준에 미포함
- 회원 확보가 용이한 생활체육 중심 종목에게 유리한 시군구종목단체 수만을 등급 분류 기준으로 설정

대안 모색시 필수 고려사항

- ① 종목단체 관계자 등 체육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
- ② 국제대회 성적, 학교팀 및 스포츠클럽 수, 정책적 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준 재논의
 - 1안: 통합체육회 출범 전 분류 재조정 / - 2안: 통합체육회 출범 후 제도발전위원회 논의 후 재조정

※ 제13차 통합준비위원회 의결: 학교체육 현실 등을 포함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여 차기회의('16년 1월) 시 보고
→ 동 사안에 대해서는 제도발전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심층 연구

올림픽 종목이 준회원 단체로 강등된다면...?



역대 올림픽 메달 획득 주요종목
1~10위 중 70%가 준회원단체로 강등 우려
(빙상, 양궁, 유도, 레슬링, 사격, 복싱, 역도 등)

보조금 지원 제한(행정 보조비 2,400만원만 지원)으로
인해 인건비, 훈련비 감당 불가 → 경기력 저하

준회원단체가 되어 통합체육회 대의원 자격 상실

→ 국제연맹에서 NF로서의 스포츠 외교력 약화

→ 올림픽종목 단체는 NOC의 구성원이어야 한다는
IOC 올림픽 현장 위배 우려

체육단체 통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